**◉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 ② |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 ③ |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
| ④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
| ⑤ |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2.** 수익인식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② | 보험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 ③ |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
| ⑤ |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 |

**3.** ㈜한국건설은 20×1년초에 ㈜대한과 교량건설을 위한 건설계약을 발주금액 ￦10,000,000에 체결하였다. 총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인데, 20×2년도에 공사내용의 일부 변경에 따른 계약원가 추가 발생으로 건설계약금액을 ￦2,000,000 증가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동 건설계약과 관련된 연도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실제 계약원가 발생액 | ￦2,400,000 | ￦4,950,000 | ￦3,150,000 |
| 연도말 예상 추가계약원가 | 5,600,000 | 3,150,000 |  |
| 계약대금 청구액 | 2,500,000 | 5,500,000 | 4,000,000 |
| 계약대금 회수액 | 2,500,000 | 5,500,000 | 4,000,000 |

㈜한국건설이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에 기초하여 계산한다고 할 때, 동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이 20×2년말 재무상태표상 인식할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① | 미청구공사 ￦ 100,000 |
| ② | 미청구공사 ￦ 400,000 |
| ③ | 미청구공사 ￦ 500,000 |
| ④ | 초과청구공사 ￦ 100,000 |
| ⑤ | 초과청구공사 ￦ 400,000 |

**4.** ㈜ABC는 방위산업 회사로서 20×1년 6월 30일 방위산업설비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500,000에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50,000을 현금으로 보조 받았다.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를 1년 이상 사용한다면 정부에 상환할 의무가 없다. 취득한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10년이고 추정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ABC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만 3년 후인 20×4년 7월 1일에 동 기계장치를 ￦300,000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의 처분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  |  |
| --- | --- |
| ① | 처분손실 ￦ 10,000 |
| ② | 처분이익 ￦ 10,000 |
| ③ | 처분손실 ￦ 15,000 |
| ④ | 처분이익 ￦ 15,000 |
| ⑤ | 처분손실 ￦ 20,000 |

**5.**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만을 사용하더라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
| ②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하의 기말재고자산금액은 평균법 하의 기말재고자산금액보다 작지 않다. |
| ③ |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판매가능재고자산의 원가와 판매가를 이용하여 산출한 원가율을 매출액에 곱하여 결정한다. |
| ④ |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총합계액이 취득원가 총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계상될 수 있다. |
| ⑤ |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그 계약가격을 기초로 한다. |

**6.** ㈜대한은 20×1년 9월 1일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는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률은 36%이다. 20×2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253,440이다. 20×3년도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계산 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① | ￦ 85,899 |
| ② | ￦ 91,238 |
| ③ | ￦ 102,005 |
| ④ | ￦ 103,809 |
| ⑤ | ￦ 162,202 |

**7.** ㈜일용은 20×1년 6월말 재고자산을 보관중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재고자산과 재고자산에 관한 장부를 소실하였다. 회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재 이후 20×1년 12월말까지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  |
| --- |
| 가. 20×0년말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450,000이며, 매출채권은 ￦200,000, 매입채무는 ￦150,000이다.  나. 20×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각각 ￦8,000,000과 ￦6,400,000이다.  다. 20×1년 6월말 현재 매출채권보조원장 차변 합계액은 ￦3,000,000이고, 매입채무보조원장 대변 합계액은 ￦2,300,000이다. 회사는 모두 신용거래만을 하고 있다.  라. 20×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2,400,000, ￦3,100,000이다.  마. 20×1년말 ㈜일용의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은 ￦200,000이다.  바. 20×1년 12월 ￦80,000을 차입하기 위해 재고자산 ￦100,000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20×1년말 현재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사. 20×1년 9월에 할부조건으로 판매된 재고자산은 모두 ￦200,000이며, 20×1년말 현재 할부금의 50%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미회수중인 할부금의 회수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아. 20×1년 10월부터 재고자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의 형태로 매출하고 있으며, 20×1년말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일용의 재고자산은 ￦300,000이다. |

㈜일용의 20×1년 6월의 재고자산화재손실 금액과 20×1년말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1년 6월말까지의 매출원가는 20×0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활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자산화재손실 |  | | | 기말재고자산 |  |
| ① | ￦ 200,000 | | |  | ￦ 580,000 | | |
| ② | ￦ 200,000 | | |  | ￦ 600,000 | | |
| ③ | ￦ 350,000 | | |  | ￦ 600,000 | | |
| ④ | ￦ 360,000 | | |  | ￦ 600,000 | | |
| ⑤ | ￦ 360,000 | | |  | ￦ 700,000 | | |

**8.**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 ② |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 ③ | 비화폐성자산간의 교환거래가 상업적실질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 ④ |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되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에서 환입하여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

**9.** ㈜ABC는 당기말에 완공한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총차입원가 ￦100,000을 자본화하였고 사옥건물에 대한 연평균지출액은 ￦900,000이었다. ㈜ABC는 사옥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차입금을 은행으로부터 연 10% 이자율로 ￦600,000을 직접 차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200,000은 연 8%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16,00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정차입금으로 사용한 연평균지출액은 ￦400,000이었다. 특정차입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액은 전액 일반차입금으로 지출되었다고 가정한다.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9.2% | ② | 11.2% | ③ | 14.2% | ④ | 16.2% | ⑤ | 18.2% |

**10.** ㈜ABC는 20×1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가 ￦100,000이고 사용가치는 ￦120,000이며, 손상차손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20×3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150,000으로 상승하였다. ㈜ABC가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3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 90,000 | ② | ￦ 60,000 | ③ | ￦ 50,000 |
| ④ | ￦ 20,000 | ⑤ | ￦ 10,000 |  |  |

**11.** ㈜대경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7%(매년말 이자지급), 3년 만기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9%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한편, ㈜대경이 동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발행비 ￦24,011이 발생하였다. ㈜대경은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92,538을 인식하였다. ㈜대경이 20×2년 5월 31일에 상기 사채를 ￦1,050,000(미지급이자 포함)에 매입하였다면, 사채상환손실은 얼마인가?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나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또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율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년 | 2년 | 3년 | 1년 | 2년 | 3년 |
| 7% | 0.9346 | 0.8734 | 0.8163 | 0.9346 | 1.8080 | 2.6243 |
| 9% | 0.9174 | 0.8417 | 0.7722 | 0.9174 | 1.7591 | 2.5313 |

|  |  |
| --- | --- |
| ① | ￦ 12,045 |
| ② | ￦ 39,254 |
| ③ | ￦ 50,000 |
| ④ | ￦ 62,585 |
| ⑤ | ￦ 76,136 |

**12.** ㈜태평은 20×1년말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  |
| --- |
| 가. 20×1년 12월 15일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조직구조 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250,000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년말까지 회사는 동 구조조정계획에 착수하지 않았다.  나. 회사는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에 제소되어 있다. 만약 동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태평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은 ￦100,000으로 추정된다. ㈜태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다. 회사가 사용중인 공장 구축물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이를 철거하고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은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 금액은 ￦140,000이다.  라.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증 비용이 ￦200,000으로 예상되고, 그 지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회사는 동 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

㈜태평이 20×1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 위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  |  |
| --- | --- |
| ① | ￦ 240,000 |
| ② | ￦ 340,000 |
| ③ | ￦ 440,000 |
| ④ | ￦ 590,000 |
| ⑤ | ￦ 690,000 |

**13.** 다음은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20×1년도 자료이다.

|  |
| --- |
| 가. 20×1년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4,500,000과 ￦4,200,000이다.  나. 20×1년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5,000,000과 ￦3,800,000이다.  다. 20×1년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으며, 20×1년말에 추가로 적립한 기여금 납부액은 ￦200,000이다.  라. 20×1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증가하는 예상미래퇴직급여지급액의 현재가치는 ￦500,000이다.  마. 20×1년말 확정급여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종업원의 과거근무기간의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300,000 증가하였다.  바. 20×1년초와 20×1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연 시장수익률은 각각 8%, 10%이며,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로 사용한다. |

㈜한국의 확정급여제도로 인한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 ① | ￦ 548,000 감소 |  | ￦ 52,000 감소 |
| ② | ￦ 600,000 감소 |  | ￦ 300,000 감소 |
| ③ | ￦ 830,000 감소 |  | ￦ 270,000 감소 |
| ④ | ￦ 830,000 감소 |  | ￦ 276,000 증가 |
| ⑤ | ￦ 824,000 감소 |  | ￦ 276,000 감소 |

**14.**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 ② |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있다. |
| ③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④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⑤ |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

**15.** 20×1년 1월 1일에 ㈜대한은 ㈜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이자는 매년말 후급)의 3년 만기 사채를 ￦950,22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었다. 동 사채의 20×1년말 공정가치는 ￦970,000이었으며, 20×2년초에 ￦975,000에 처분하였다. ㈜대한의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99,780 증가한다. |
| ②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95,022 증가한다. |
| ③ |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95,022 증가한다. |
| ④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 증가한다. |
| ⑤ |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2년 당기순이익은 ￦9,758 증가한다. |

**16.** ㈜대한은 20×1년중에 ㈜한국이 발행한 10주를 주당 ￦110,000에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2년중에 ㈜한국은 영업부진의 어려움으로 주식의 공정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3년에는 ㈜한국의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공정가치가 크게 회복되었다. ㈜한국 주식의 각 회계연도말 주당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대한의 20×2년도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주식수 | 주당  취득원가 | 주당 공정가치 | | |
| 20×1년말 | 20×2년말 | 20×3년말 |
| ㈜한국 주식 | 10주 | ￦110,000 | ￦100,000 | ￦60,000 | ￦1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년 |  | | | 20×3년 |  |
| ① | ￦ 400,000 감소 | | |  | ￦   0 | | |
| ② | ￦ 400,000 감소 | | |  | ￦ 400,000 증가 | | |
| ③ | ￦ 400,000 감소 | | |  | ￦ 600,000 증가 | | |
| ④ | ￦ 500,000 감소 | | |  | ￦  0 | | |
| ⑤ | ￦ 500,000 감소 | | |  | ￦ 400,000 증가 | | |

**17.** ㈜대경은 20×1년 1월 1일에 상품을 ￦4,000,000에 판매하고 대금은 20×1년부터 매년 12월 31일에 ￦1,000,000씩 4회에 분할수령하기로 하였다. 장기할부판매대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고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 20×2년말 현재 대손 추산액은 ￦300,000이다. 장기매출채권의 20×2년말 현재 장부금액(순액)은 얼마인가?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나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또한 유동성대체는 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율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1년 | 2년 | 3년 | 4년 | 1년 | 2년 | 3년 | 4년 |
| 10% | 0.9091 | 0.8265 | 0.7513 | 0.6830 | 0.9091 | 1.7355 | 2.4869 | 3.1699 |

|  |  |
| --- | --- |
| ① | ￦ 1,435,579 |
| ② | ￦ 1,735,580 |
| ③ | ￦ 2,086,857 |
| ④ | ￦ 2,869,900 |
| ⑤ | ￦ 3,535,579 |

**18.** ㈜ABC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0이며, 상환기일이 20×3년 12월 31일,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연 5%로 매년말 이자를 지급한다. 이 전환사채와 동일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며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한 연 보장수익률은 액면금액의 10%이다. 20×1년 1월 1일 전환사채 발행시 계상되는 전환권대가는 얼마인가? 단,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나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3년 기준 | 5% | 10% | 12% |
| 단일금액 ￦1 현재가치 | 0.8638 | 0.7513 | 0.7118 |
| 정상연금 ￦1 현재가치 | 2.7232 | 2.4868 | 2.4018 |
| 정상연금 ￦1 미래가치 | 3.1525 | 3.3100 | 3.3744 |

|  |  |  |  |  |  |
| --- | --- | --- | --- | --- | --- |
| ① | ￦ 50,307 | ② | ￦ 40,307 | ③ | ￦ 30,307 |
| ④ | ￦ 90,397 | ⑤ | ￦ 170,397 |  |  |

**19.** ㈜청명은 20×1년 1월 1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98,000에 발행하였다. 다음은 이 사채와 관련된 사항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이고 만기는 20×3년 12월 31일이다.  ∙ 액면금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매 연도말 지급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20×1년 2월 1일부터 20×3년 11월 30일까지이다.  ∙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채의 액면금액 ￦1,000당 주식 1주를 인수할 수 있으며, 행사금액은 주당 ￦8,000이다. 발행하는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동일조건을 가진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  |  |  | | --- | --- | --- | | 3년 기준 | 6% | 10%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0.8396 | 0.7513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2.6730 | 2.4869 | |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20×2년 1월 1일에 행사되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나,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발행초과금 |  | | | 이자비용 |  |
| ① | ￦ 210,000 | | |  | ￦ 2,792 | | |
| ② | ￦ 215,564 | | |  | ￦ 2,792 | | |
| ③ | ￦ 212,385 | | |  | ￦ 8,511 | | |
| ④ | ￦ 216,964 | | |  | ￦ 9,005 | | |
| ⑤ | ￦ 215,564 | | |  | ￦ 9,306 | | |

**20.** ㈜대한은 20×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1,0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20×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60이며, 각 연도말 퇴직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연 도 | 실제 퇴직자수 | 추가퇴직 예상자 수 |
| 20×1년말 | 10명 | 20명 |
| 20×2년말 | 15명 | 13명 |
| 20×3년말 | 8명 | - |

주식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한의 20×2년 12월 31일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단위당 ￦250이 되었다. 동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대한이 인식할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주식보상비용은 얼마인가? 단,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① | ￦ 1,933,333 |
| ② | ￦ 5,166,667 |
| ③ | ￦ 6,480,000 |
| ④ | ￦ 6,672,000 |
| ⑤ | ￦ 8,400,000 |

**21.** ㈜대한은 20×1년 1월 1일 ㈜한국리스로부터 기계장치를 리스하기로 하고, 동 일자에 개시하여 20×3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간 정기리스료는 매년 말 ￦1,000,000을 후급하며,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는 ￦1,000,000이다. 리스개설과 관련한 법률비용으로 ㈜대한은 ￦100,000을 지급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대한은 염가매수선택권을 ￦5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하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이 동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할인율=10%) |
| 1 | 0.9091 | 0.9091 |
| 2 | 0.8265 | 1.7355 |
| 3 | 0.7513 | 2.4869 |
| 4 | 0.6830 | 3.1699 |
| 5 | 0.6209 | 3.7908 |

|  |  |
| --- | --- |
| ① | ￦ 746,070 |
| ② | ￦ 766,070 |
| ③ | ￦ 858,765 |
| ④ | ￦ 878,765 |
| ⑤ | ￦ 888,765 |

**22.** 아래 자료는 ㈜한국의 20×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 내용이다.

|  |
| --- |
| ∙ 20×1년말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30,000이다.  ∙ 20×1년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은 ￦10,000이다.  ∙ 20×1년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5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동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은 20×3년도에 소멸된다고 가정한다.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1년까지 법인세율이 30%이었으나, 20×1년말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년 과세소득 분부터 적용할 세율은 20%로 미래에도 동일한 세율이 유지된다. |

㈜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일시적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으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① | ￦ 260,000 |
| ② | ￦ 310,000 |
| ③ | ￦ 335,000 |
| ④ | ￦ 360,000 |
| ⑤ | ￦ 385,000 |

**23.** ㈜대경은 20×4년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20×4년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22,000과 ￦18,000만큼 감소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할 때 인정된다. 만일 회계정책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대경의 20×4년 당기순이익은 ￦160,000이고, 20×4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은 ￦540,000이 된다. 회계정책변경 후 ㈜대경의 20×4년 당기순이익과 20×4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이익잉여금 |  |
| ① | ￦ 120,000 | | |  | ￦ 522,000 | | |
| ② | ￦ 156,000 | | |  | ￦ 558,000 | | |
| ③ | ￦ 156,000 | | |  | ￦ 602,000 | | |
| ④ | ￦ 164,000 | | |  | ￦ 522,000 | | |
| ⑤ | ￦ 200,000 | | |  | ￦ 602,000 | | |

**24.** 다음은 제조기업인 ㈜대한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00,000  ∙ 대손상각비 : ￦3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000  ∙ 건물 감가상각비 : ￦40,000  ∙ 이자비용 : ￦50,000  ∙ 법인세비용 : ￦14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이익 : ￦15,000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  - 매출채권(순액) : ￦100,000 증가  - 매입채무 : ￦50,000 감소  - 재고자산(순액) : ￦20,000 증가  - 단기매매금융자산 : ￦50,000 감소  - 미지급이자 : ￦70,000 증가 |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20×1년 ㈜대한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가?

|  |  |
| --- | --- |
| ① | ￦ 420,000 |
| ② | ￦ 456,000 |
| ③ | ￦ 470,000 |
| ④ | ￦ 495,000 |
| ⑤ | ￦ 535,000 |

**25.** ㈜대경의 20×2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50,000,000(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대경의 20×2년 당기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기초미행사 신주인수권 : 1,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주당 ￦6,000  ∙ 기중 보통주 평균시가 : 주당 ￦10,000 |

20×2년 10월 1일에 신주인수권 800개가 행사되었다. 가중평균주식수를 월할계산했을때 20×2년 당기 희석주당이익이 ￦620이라고 하면, 20×2년 ㈜대경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① | ￦ 6,398,400 |
| ② | ￦ 6,423,200 |
| ③ | ￦ 6,522,400 |
| ④ | ￦ 6,572,000 |
| ⑤ | ￦ 6,671,200 |

**26.** 20×2년 2월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일 직후 작성된 ㈜대경의 20×1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보통주 자본금  ∙ 이익준비금  ∙ 사업확장적립금  ∙ 감채기금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30,000,000  1,000,000  500,000  600,000  800,000 |

㈜대경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200,000이고,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예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감채기금적립금 이입  ∙ 현금배당  ∙ 주식배당  ∙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 이익준비금 적립 | ￦300,000  400,000  100,000  250,000  법정최소금액 적립 |

위 사항들이 20×3년 2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  |  |
| --- | --- |
| ① | ￦ 1,510,000 |
| ② | ￦ 1,550,000 |
| ③ | ￦ 1,610,000 |
| ④ | ￦ 1,650,000 |
| ⑤ | ￦ 1,800,000 |

**27.**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②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③ | 미인식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확정계약이 이행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중도상환위험이나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
| ⑤ | 변동이자율 수취조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율스왑(변동금리 지급, 고정금리 수취)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유형에 해당한다. |

**28.** ㈜한국은 20×1년중 미래의 재고매입에 대한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동 거래에서 발생한 20×1년과 20×2년의 연도별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 변동액(현재가치)이 다음과 같다면, 20×2년의 당기손익에 보고될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20×1년 |  | 20×2년 |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 50,000 |  | ￦ (30,000) | | 예상거래 현금흐름 변동액의 현재가치 |  | (48,000) |  | 32,000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30,000 손실 | ② | ￦ 2,000 손실 | ③ | ￦ 0 |
| ④ | ￦2,000 이익 | ⑤ | ￦ 4,000 이익 |  |  |

**29.** ㈜갑은 20×1년초에 설립되었으며, 미국달러화(USD)를 기능통화로 사용하여 왔다. 20×3년초 주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갑은 원화(KRW)를 새로운 기능통화로 결정하였다. 달러화로 측정된 ㈜갑의 20×3년초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약재무상태표 | | | | | | | | | | ㈜갑 | | 20×3년 1월 1일 현재 | | | | (단위: 달러) | | | | 자산 |  | $ 8,400 |  |  | 부채 | |  | $ 5,250 | |  |  |  |  |  | 자본금 | |  | 2,000 | |  |  |  |  |  | 이익잉여금 | |  | 1,150 | | 자산총계 |  | $ 8,400 |  |  | 부채및자본총계 | |  | $ 8,400 |   ∙ 자본금은 설립시의 발행금액으로서 설립 후 변동은 없다. 또한 20×1년과 20×2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450과 $700이다.  ∙ ㈜갑의 설립시부터 20×3년초까지 환율변동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 | 환율(￦/$) |  | | 20×1년초 | |  | 1,000 | | | | 20×1년 평균 | |  | 1,020 | | | | 20×1년말ᆞ20×2년초 | |  | 1,050 | | | | 20×2년 평균 | |  | 1,080 | | | | 20×2년말ᆞ20×3년초 | |  | 1,100 | | | |

20×3년초 현재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누계액)는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이익잉여금 |  | | | 환산차이 |  |
| ① | ￦ 2,200,000 | | |  | ￦ 1,265,000 | | |  | ￦  0 | | |
| ② | ￦ 2,200,000 | | |  | ￦ 1,215,000 | | |  | ￦ 50,000 | | |
| ③ | ￦ 2,000,000 | | |  | ￦ 1,265,000 | | |  | ￦ 185,000 | | |
| ④ | ￦ 2,000,000 | | |  | ￦ 1,242,500 | | |  | ￦ 222,500 | | |
| ⑤ | ￦ 2,000,000 | | |  | ￦ 1,215,000 | | |  | ￦ 250,000 | | |

**30.** ㈜대한은 20×1년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30주(지분율 30%)를 ￦120,000에 취득하였다. 이로서 ㈜대한은 ㈜민국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장부금액은 ￦350,000이며,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정과목 |  | | | 장부금액 |  | | | 공정가치 |  | | 재고자산 | | |  | ￦ 50,000 | | |  | ￦ 60,000 | | | | 기계장치 | | |  | 100,000 | | |  | 150,000 | | |   ∙ 위의 자산 중 재고자산은 20×1년중에 전액 외부에 판매되었으며, 기계장치는 20×1년초 현재 잔존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에 ㈜민국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50,000이며, 동 기간 중에 결의되거나 지급된 배당금은 없다. |

㈜대한이 ㈜민국의 보통주를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년말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 120,000 | ② | ￦ 129,000 | ③ | ￦ 132,000 |
| ④ | ￦ 135,000 | ⑤ | ￦ 138,000 |  |  |

**31**. 다음은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인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모두 가져야 한다. |
| ② | 둘 이상의 투자자들이 각각에게 다른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
| ③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
| ④ |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힘을 가질 수 있다. |
| ⑤ |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더라도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32.** ㈜지배는 ㈜종속 보통주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이다. 20×1년중 ㈜지배는 취득원가 ￦25,000의 토지를 ㈜종속에 매각하였으며, 20×1년말 현재 해당 토지는 ㈜종속이 보유하고 있다. 20×1년말 ㈜지배와 ㈜종속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토지의 장부금액이 아래와 같다면, ㈜지배와 ㈜종속간 토지의 매매금액은 얼마인가? 단, ㈜지배와 ㈜종속은 토지를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있으며, 위 매각거래 이외의 내부거래는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정과목 |  | ㈜지배 |  | ㈜종속 |  | 연결재무제표 | | 토지 |  | ￦ 100,000 |  | ￦ 80,000 |  | ￦ 168,000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10,000 | ② | ￦ 13,000 | ③ | ￦ 25,000 |
| ④ | ￦ 37,000 | ⑤ | ￦ 40,000 |  |  |

**33.** ㈜갑은 20×1년 1월 1일에 ㈜을의 보통주 70%를 ￦210,000에 취득하였으며, 동 일자에 ㈜을은 ㈜병의 보통주 80%를 ￦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을과 ㈜병의 주주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  | ㈜병 | | 자 본 금 |  | ￦ 150,000 |  | ￦ 50,000 | | 이익잉여금 |  | 100,000 |  | 30,000 | | 계 |  | ￦ 250,000 |  | ￦ 80,000 | |

20×1년 ㈜을과 ㈜병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6,000과 ￦5,000이며, 배당 및 기타 자본변동은 없다. ㈜갑과 ㈜을은 각각 ㈜을과 ㈜병의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1년말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단, 영업권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 91,000 | ② | ￦ 98,800 | ③ | ￦ 99,800 |
| ④ | ￦ 101,000 | ⑤ | ￦ 101,300 |  |  |

※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34번**과 **문제 35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은 20×1년중에 ㈜을의 보통주 10주(지분율 10%)를 ￦3,000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갑은 20×2년초에 ㈜을의 나머지 지분 90%를 취득하여 합병하였다. 그 대가로 ㈜갑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자기주식 18주(주당 장부금액 ￦1,800)를 ㈜을의 다른 주주에게 교부하였다.  ∙ 합병일 현재 ㈜갑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2,000, 액면금액은 주당 ￦1,000이며, ㈜갑이 보유하고 있던 ㈜을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350이다.  ∙ 합병일 현재 ㈜을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 | | | | | | | | | | | | | ㈜을 | | 20×2년 1월 1일 현재 | | | | | | | (단위:원) | | | |  | 장부금액 | |  | 공정가치 |  |  |  | 장부금액 | |  | 공정가치 | | 유동자산 | ￦ 20,000 | |  | ￦ 22,000 |  |  | 부채 | ￦ 25,000 | |  | ￦ 25,000 | | 유형자산 | 30,000 | |  | 35,000 |  |  | 자본금 | 10,000 | |  |  | | 무형자산 | 10,000 | |  | 13,000 |  |  | 이익잉여금 | 25,000 | |  |  | | 합계 | ￦ 60,000 | |  |  |  |  | 합계 | ￦ 60,000 | |  |  |   ∙ 위 재무상태표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 ㈜을은 운용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인데, 당해 운용리스의 조건이 시장조건에 비하여 ￦500만큼 유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합병일 현재 ㈜을은 새로운 고객과 협상중인 계약이 있으며, 잠재적 계약의 가치는 ￦2,000으로 추정된다.  - 합병일 현재 ㈜을은 손해배상소송사건에 피소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손실금액의 공정가치는 ￦1,500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패소할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평가된다.  - ㈜을의 연구개발부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합병 후의 시너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을이 측정한 인적자원의 공정가치는 ￦1,000이다. |

**34.** ㈜갑이 ㈜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일에 인식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 43,500 | ② | ￦ 44,000 | ③ | ￦ 44,750 |
| ④ | ￦ 45,500 | ⑤ | ￦ 46,000 |  |  |

**35.** 위 34번 문제의 결과와 관계없이, ㈜갑이 ㈜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일에 인식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30,000으로 가정한다. ㈜갑이 합병일에 인식할 영업권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 5,400 | ② | ￦ 5,900 | ③ | ￦ 6,000 |
| ④ | ￦ 9,000 | ⑤ | ￦ 9,500 |  |  |

**36.** 다음은 국가회계기준과 관련한 회계준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금비용 중 직전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증가로 인한 이자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
| ② | 국가회계실체의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은 융자보조비용에 더해져 프로그램 직접원가에 포함한다. |
| ③ |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금비용 중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은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
| ④ | 국가회계실체의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융자사업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
| ⑤ |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

**37.**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다음 거래가 A부처의 일반회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
| --- |
| ∙ 20×3년중에 프로그램 순원가로 ￦10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중에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50,000, 감가상각비 ￦30,000이 발생하였다.  ∙ 20×3년중에 부담금 수익 ￦70,000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었다.  ∙ 20×3년중에 B부처에서 무상관리환으로 ￦30,000의 자산을 수증받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부처의 일반회계 |  | | | 대한민국 정부 |  |
| ① | ￦ 180,000 증가 | | |  | ￦ 110,000 증가 | | |
| ② | ￦ 150,000 증가 | | |  | ￦ 80,000 증가 | | |
| ③ | ￦ 110,000 증가 | | |  | ￦ 110,000 증가 | | |
| ④ | ￦ 110,000 증가 | | |  | ￦ 80,000 증가 | | |
| ⑤ | ￦ 80,000 증가 | | |  | ￦ 110,000 증가 | | |

**38.** 다음은 국가회계실체와 관련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한 기금에 적용한다. |
| ② |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예산 하에서 운영되는 국가회계 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고통합계정에 불입하고 국고통합계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
| ③ | 국가의 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④ |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 중 기금운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⑤ | 국가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국가 채무는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한 국채, 차입금이다. |

**3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상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 상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상 비배분수익은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외수익으로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

**4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될 순자산항목의 금액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  |
| --- | --- |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투자액  ∙ 무형자산투자액  ∙ 일반유형자산 등의 투자재원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  ∙ 적립성기금의 원금 | ￦ 1,900,000  1,000,000  900,000  200,000  450,000  1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정순자산 |  | | | 특정순자산 |  | | | 일반순자산 |  |
| ① | ￦ 650,000 | | |  | ￦ 50,000 | | |  | ￦ 200,000 | | |
| ② | ￦ 450,000 | | |  | ￦ 150,000 | | |  | ￦ 300,000 | | |
| ③ | ￦ 650,000 | | |  | ￦ 150,000 | | |  | ￦ 100,000 | | |
| ④ | ￦ 650,000 | | |  | ￦ 0 | | |  | ￦ 250,000 | | |
| ⑤ | ￦ 450,000 | | |  | ￦ 0 | | |  | ￦ 450,000 | | |

**41.** 균형성과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균형성과표에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는 재무적 성과측정치의 후행지표가 된다. |
| ② | 균형성과표의 다양한 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조직의 전략목표 달성과정을 제시하는 성과지표의 체계를 전략지도(strategy map)라고 한다. |
| ③ | 균형성과표의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반복구매정도, 시장점유율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
| ④ | 균형성과표의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기업내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불량률, 작업폐물, 재작업율, 수율, 납기, 생산처리시간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
| ⑤ | 균형성과표의 학습과 성장 관점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및 제품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종업원만족도, 종업원 이직률, 종업원 1인당 사내훈련시간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42.**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활동기준관리(또는 활동기준경영 ABM: activity-based management) 및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자원만을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미사용된 자원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
| ② | 총원가 중 간접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원가를 도출할 수 있다. |
| ③ | 활동기준관리를 통하여 파악된 비부가가치활동에는 검사, 이동, 대기, 저장 등의 활동이 있다. |
| ④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특정 제품이 고안된 시점부터 폐기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원가를 식별하여 측정한다. |
| ⑤ | 제품수명주기원가는 시장상황의 검토를 통하여 예상되는 제품의 목표가격을 확인한 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표이익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

**43.** ㈜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계시간이다. 회사는 20×1년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600, 기계시간을 2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20×1 회계연도중 수행한 작업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1) 당기중 세 가지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여, #101과 #102를 완성하였고, #103은 기말 현재 작업 중에 있다.  (2) 당기중 ￦800의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기말 현재 ￦280의 원재료가 재고로 남아 있다.  (3) 당기중 지급한 노무원가는 ￦700이며, 기초 미지급노무원가는 ￦40, 기말 미지급노무원가는 ￦100이었다.  (4) 당기중 발생한 제조경비는 총 ￦560이며, 이는 감가상각비 ￦260, 임차료 ￦200, 수도광열비 ￦100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당기중 작업별 실제발생 원가자료와 실제 사용된 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101 | #102 | #103 | 합계 | | 직접재료원가 | ￦200 | ￦200 | ￦100 | ￦500 | | 직접노무원가 | ￦300 | ￦160 | ￦260 | ￦720 | | 기계시간 | 90시간 | 63시간 | 27시간 | 180시간 |   (6) 기초재고자산은 없었고, 작업 #101은 당기 중에 ￦1,100에 판매되었으나 작업 #102는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

㈜한국은 기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한다. ㈜한국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 250 | ② | ￦ 270 | ③ | ￦ 290 |
| ④ | ￦ 310 | ⑤ | ￦ 330 |  |  |

**44.** ㈜한국은 단일의 제품 A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가 20×1년 3월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1년 3월, 4월 및 5월에 대한 제품 A의 월별 판매예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예상판매량 | | 3월 | 100단위 | | 4월 | 120단위 | | 5월 | 140단위 |   (2) 제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재료원가는 ￦20이며, 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회사는 20×1년 2월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직접재료와 40단위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4) 20×1년 3월부터 이 회사는 제품의 경우 다음 달 예상판매량의 50%에 해당하는 제품을 월말에 재고로 보유하며, 직접재료의 경우 다음 달 생산에 필요한 직접재료의 80%를 월말에 재고로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취하고 있다.  (5) 직접재료의 매입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6) 월초재공품과 월말재공품은 없다. |

㈜한국의 20×1년 3월 직접재료 매입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 2,000 | ② | ￦ 2,080 | ③ | ￦ 2,320 |
| ④ | ￦ 2,480 | ⑤ | ￦ 2,640 |  |  |

**45.** ㈜한국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분류되는 두 종류의 정수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일반형과 고급형 정수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계시간은 각각 1시간과 2시간이다. 이 회사가 매월 사용가능한 최대 기계시간은 총 6,000시간이다. ㈜한국이 20×1년 3월에 대해 예측한 일반형과 고급형 정수기의 판매가격, 원가 및 시장수요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항 목 |  | 일반형 |  | 고급형 |
| 단위당 판매가격 |  | ￦42 |  | ￦64 |
| 단위당 변동원가 |  | ￦26 |  | ￦40 |
| 단위당 고정원가 |  | ￦6 |  | ￦6 |
| 단위당 총원가 |  | ￦32 |  | ￦46 |
| 시장수요량 |  | 2,500단위 |  | 1,500단위 |

㈜한국은 20×1년 3월의 판매예측에 포함하지 않았던 한 고객으로부터 고급형 정수기 500단위를 단위당 ￦74의 가격에 20×1년 3월중에 구입하고자 하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한국이 이 고객의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해당 제품의 단위당 변동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한국이 이 고객의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 3월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하게 될 것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 6,000 | ② | ￦ 9,000 | ③ | ￦ 11,000 |
| ④ | ￦ 14,000 | ⑤ | ￦ 17,000 |  |  |

**46**. ㈜한국은 제품라인별로 부문 X, 부문 Y 및 부문 Z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달 부문별 및 회사전체의 매출액, 비용, 이익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X |  | 부문 Y |  | 부문 Z |  | 회사전체 |
| 매출액 |  | ￦1,250 |  | ￦750 |  | ￦500 |  | ￦2,500 |
| 변동비 |  | 500 |  | 250 |  | 300 |  | 1,050 |
| 공헌이익 |  | 750 |  | 500 |  | 200 |  | 1,450 |
| 고정비: |  |  |  |  |  |  |  |  |
| 급여 |  | 325 |  | 205 |  | 150 |  | 680 |
| 감가상각비 |  | 10 |  | 20 |  | 20 |  | 50 |
| 기타일반관리비 |  | 260 |  | 156 |  | 104 |  | 520 |
| 총고정비 |  | 595 |  | 381 |  | 274 |  | 1,250 |
| 영업이익(손실) |  | ￦155 |  | ￦119 |  | ￦(74) |  | ￦200 |

.

㈜한국의 재무담당이사(CFO)가 부문 Z의 폐지여부 결정을 하기 위해 세 부문에 부과되는 비용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1) 급여는 각 부문에 속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며, 부문 Z가 폐지될 경우 회사는 부문 Z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추가 비용의 발생없이 즉시 해고시킬 수 있다.  (2)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설비에 대한 것이다. 각 부문의 설비는 부문의 특성에 맞게 주문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부문 Z가 폐지될 경우 부문 Z의 설비는 시장가치가 없다.  (3) 기타일반관리비는 회계**·**구매**·**관리비용을 나타내며, 각 부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배부된다. 부문 Z가 폐지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기타일반관리비 총액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이 부문 Z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문 Z가 사용하던 유휴 공간 및 설비에 대한 대체적 용도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지난달 회사전체 공통고정비는 ￦520이다. |
| ② | 지난달 부문 X에 대해 추적가능한 고정비는 ￦325이다. |
| ③ | 지난달 부문 Y에 대한 공통고정비 배부전 부문이익(segment margin)은 ￦275이다. |
| ④ | 부문 Z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피가능한 고정비는 월 ￦150이다. |
| ⑤ | 부문 Z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전체의 영업이익은 월 ￦50만큼 감소할 것이다. |

※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47번**과 **문제 48번**에 답하시오.

㈜한국은 세 개의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각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2월 최종공정인 제3공정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물량단위 |  | 가공원가  완성도 |  | 전공정  원가 |  | 직접  재료원가 |  | 가공원가 |
| 기초재공품 |  | 3,000단위 |  | 40% |  | ￦14,750 |  | ￦2,000 |  | ￦10,250 |
| 당기투입 |  | 12,000단위 |  | ? |  | ￦56,500 |  | ￦58,000 |  | ￦92,950 |
| 완성품 |  | 10,000단위 |  | ? |  |  | | | | |
| 기말재공품 |  | 4,000단위 |  | 60% |  |

제3공정에서는 공손품 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실시하며, 당월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공손원가는 당월완성품과 월말재공품에 배부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2월중 제3공정에서 발견된 공손품은 추가가공 없이 즉시 모두 폐기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0이다.

**47.** 20×1년 2월 제3공정의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공정원가 |  | | | 직접재료원가 |  | | | 가공원가 |  |
| ① | 15,000단위 | | |  | 14,500단위 | | |  | 12,900단위 | | |
| ② | 15,000단위 | | |  | 15,000단위 | | |  | 13,400단위 | | |
| ③ | 15,000단위 | | |  | 15,000단위 | | |  | 12,900단위 | | |
| ④ | 14,500단위 | | |  | 14,500단위 | | |  | 13,400단위 | | |
| ⑤ | 14,500단위 | | |  | 14,500단위 | | |  | 12,900단위 | | |

**48.** 20×1년 2월 제3공정의 비정상공손원가와 완성품원가와 관련된 월말 분개로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① | (차) 제품 177,425 |  | (대) 재공품-제3공정 171,050   비정상공손 6,375 |
| ② | (차) 제품 173,875 |  | (대) 재공품-제3공정 170,050   비정상공손 3,825 |
| ③ | (차) 제품 173,875   비정상공손 6,375 |  | (대) 재공품-제3공정 180,250 |
| ④ | (차) 제품 174,375   비정상공손 6,375 |  | (대) 재공품-제3공정 180,750 |
| ⑤ | (차) 제품 173,875   비정상공손 3,825 |  | (대) 재공품-제3공정 177,700 |

**49.** ㈜한국은 단일의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세 가지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나, 제품 C는 추가가공을 거쳐서 판매된다. 분리점에서 제품 C의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20×1년 2월 제품별 생산량, 월말제품재고량 및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 생산량 |  | 월말제품재고량 |  | 톤당 판매가격 |
| A |  | 60톤 |  | 36톤 |  | ￦300 |
| B |  | 80톤 |  | 12톤 |  | ￦200 |
| C |  | 100톤 |  | 5톤 |  | ￦140 |

20×1년 2월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16,000이고, 제품 C의 추가가공원가는 ￦8,000이며, 각 결합제품의 월초재고와 월말재공품은 없었다. ㈜한국은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한국의 20×1년 2월 매출원가와 월말제품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출원가 |  | | | 월말제품 |  |
| ① | ￦ 18,500 | | |  | ￦ 5,500 | | |
| ② | ￦ 18,200 | | |  | ￦ 5,800 | | |
| ③ | ￦ 17,900 | | |  | ￦ 6,100 | | |
| ④ | ￦ 17,600 | | |  | ￦ 6,400 | | |
| ⑤ | ￦ 17,300 | | |  | ￦ 6,700 | | |

**50.** ㈜한국은 상호대체가 가능한 두 종류의 노무등급인 고급노무인력과 저급노무인력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직접노무원가에 대해 매월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1년 2월의 각 노무등급별 표준직접노무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표준임률 |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무시간 |
| 고급노무인력 |  | ￦20 |  | 200시간 |
| 저급노무인력 |  | ￦12 |  | 200시간 |

20×1년 2월의 각 노무등급별 실제임률과 실제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실제임률 |  |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 |
| 고급노무인력 |  | ￦21 |  | 220시간 |
| 저급노무인력 |  | ￦13 |  | 160시간 |

㈜한국의 20×1년 2월 직접노무원가의 배합차이와 수율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합차이 |  | | | 수율차이 |  |
| ① | ￦ 280 유리 | | |  | ￦ 300 유리 | | |
| ② | ￦ 280 유리 | | |  | ￦ 300 불리 | | |
| ③ | ￦ 240 불리 | | |  | ￦ 300 유리 | | |
| ④ | ￦ 240 불리 | | |  | ￦ 320 유리 | | |
| ⑤ | ￦ 240 불리 | | |  | ￦ 320 불리 | |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

여 백

여 백

여 백

여 백

여 백